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4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2.

발 의 자 : 김선민 · 김준형 · 서왕진
용혜인 · 한창민 · 박은정
김재원 · 차규근 · 서미화
최혁진 · 신장식 · 이주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의료인, 교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현장조사, 피해장애인 응급보호 등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음. 이로 인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 피해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장애인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2항제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3.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